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85 발의연월일: 2024. 9. 3.

발 의 자:김희정·박준태·김종양

김승수 • 박성민 • 김도읍

서일준 · 정연욱 · 김은혜

이인선 · 김태호 · 권영진

곽규택 • 최수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. 특히,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.

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 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 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 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로하고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기에 대한 의무)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제조사로 하 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6에 따 른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전기자동차
- 2. 하이브리드자동차
- 3. 수소전기자동차
-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	표기에 대한 의무) ① 산업통상
	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
	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
	제조사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
	외부에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
	2조제1호의6에 따른 구동축전
	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
	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
	<u>있다.</u>
	<u>1. 전기자동차</u>
	2. 하이브리드자동차
	3. 수소전기자동차
	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
	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
	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<u>제11조의2 ~ 제11조의5</u> (생 략)	<u>제11조의3 ~ 제11조의6</u> (현행 제
	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와
	같음)